

	자유학기진로체험센터규정	규정번호	3-7-11
		제정일자	2016.03.01.
		개정일자	2020.06.01.
		개정차수	1차
		소관부서	대외협력처 (자유학기진로체험센터)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초·중·고등학교의 진로체험과 중학교 자유학기제도의 진로체험을 위한 안산대학교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 자유학기진로체험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업무,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업무) 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진로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2. 학과전공분야 진로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
3. 진로적성검사 상담 및 진로 상담 지원
4. 진로체험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
5. 단위 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 지원

제 2장 조직 및 구성

제3조(센터장) 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,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며, 센터의 소속 교직원을 지휘, 감독한다.

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4조(사무직원) ① 센터의 운영을 위해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.

② 사무직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인사 규정에 따른다.

제 3장 운영위원회

제5조(구성)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의 구성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한다.

제6조(임기)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, 연임할 수 있다.

제7조(위원장 및 직무)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한다.

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.

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8조(기능) 위원회는 센터장의 자문에 응하고 다음 각 호를 심의 한다.

1. 센터운영에 관한 사항
2. 진로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
3. 기타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9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.

- ② 위원회는 간사를 둘 수 있다.
-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4장 재정과 회계

제10조(재정) 센터의 재정은 대학의 예산과 보조금, 용역비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제11조(회계연도) 센터의 회계연도는 대학의 회계연도와 같다.

제12조(연구활동비)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활동비(연구비,조사비,수당)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 5장 보 칙

제13조(운영세칙) 기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6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 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